

IOT 사업 협력 협약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는 건설산업과 흠IOT 기술 융합을 통하여 아파트 내에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LG유플러스의 흠IOT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에게 스마트홈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분야)

- 양사는 입주민의 주거 편의 향상을 위한 흠IOT 서비스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력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 이와 같은 공통의 인식 아래 양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오금지구 보금자리주택 1단지 및 2단지에 대한 “흡IOT 시범단지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 또한 양사는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흠IOT 서비스 구축 및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 양사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무)

- 양사는 제2조 협력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본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사 합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4조 (기밀 유지)

- 양사는 본 협약서 및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양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본 협약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본 조의 규정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본 협약기간 동안은 물론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 (협약 기간)

1.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연장에 관하여 상호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권리 의무의 승계)

일방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단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공동 협약에 따른 사항은 포괄 승계한다.

제7조 (홍보)

양사는 상호 협력한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 (법적 구속력 및 보칙)

1. 본 협약은 제4조의 기밀유지 의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9월 21일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사 장 변 창 흠

변 창 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 표 이 사 원 영 수

원영수